

지부 운영 규정 및 세칙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차 례

■ 규정

지부 운영 규정 (2026.07.01.)	-----	3
------------------------	-------	---

■ 세칙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	16
선거관리 운영 세칙 (2026.07.01.)	---	19
회계 운영 세칙 (2026.07.01.)	-----	25
출장여비지급 운영 세칙	-----	30
국내출장여비 지급 세칙	-----	32
대내경조금 지급 세칙 (2026.07.01.)	--	33

지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라 한다.(이하 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에 두며 지부 산하 지회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평택지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2. 원주지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3. 익산지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

제4조[활 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총회, 대의원 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 직

제5조[구 성]

1. 지부는 기업단위의 만도지부 관할 구역에 속한 주)HL만도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된다. 단, 회사 측의 사업확장 등에 의해 법인체 분리 이전된 공장이 발생하거나 공장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조직대상에 포함한다.
2. 조합원의 자격은 사무직 중 과장 미만, 기능직 중 직장 미만, 별정직은 단협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한 사원으로 하며,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의 취득은 아래 3, 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단,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 종사자에 한해서는 지회소속의 분회를 둔다.

3.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규약 제10조에 따르며 가입신청서 제출 시 지부장은 규약과 지부규정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4. 법인체 분리와 관련된 퇴직자와 공장 분리 매각 및 고용조정으로 인한 경영상의 퇴직, 해고자 중 본인이 원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5.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해고자는 조합의 지시를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6.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제 명
 - 2) 사 망
7. 지회단위는 다음과 같이 둔다. 단, 지회 설치 사유 발생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평택지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원주지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익산지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 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으며 유인물이나 공고문을 기명하여 배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의 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2. 조합규약, 규정 및 지부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
3.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준수 및 조합원의 명예유지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 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정치위원회
8. 통일위원회
9. 기타 규약에서 정한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9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지부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 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4조[임 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2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16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접수 후 10일 이내의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및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지회장
5. 지부 부서부장
6. 수석부지회장(각 지회)

제19조[소 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기 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합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위원 임·면결의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3.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4.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입사항
15. 예산목간전용 승인
16. 신분보장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소액 심의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 성] 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각종위원회 위원장, 지부부서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 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기 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 종 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4조[구 성] 감사위원회는 각 지회 감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5조[기 능]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감사는 각 지회 감사위원 1명씩 참석하여 3개월마다 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한 후 그 감사결과를 조합원(대의원)에게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3. 지회감사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회감사위원이 감사를 하고, 지부감사위원은 6개월마다 지회감사를 하고 지부장에게 보고한 후 그 감사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4. 조합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5. 재정 및 예산집행감사
6. 지회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위임된 지회 감사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7절 정치위원회

제27조[정치위원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회의 정치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지회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의 정치위원이 된다.

제8절 통일위원회

제28조[통일위원회] 노동자의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부의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회의 통일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지회의 통일위원장은 지부의 통일위원이 된다.

제9절 교육위원회

제29조 [교육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교육 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한다.

1. 교육 위원회의 구성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교육위원장은 지부장이 위촉한다.
3. 지회 교육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임원

제30조[임 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감사위원

제31조[임 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 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 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 8)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지부장

(2) 지회장

(3)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 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4. 감사위원 : 감사위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2조[선 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3조[임원의 보궐선거]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 지부의 운영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 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투표)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부서

제36조[부서 설치] 지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부장을 둔다.

1. 조직부
2. 교육부
3. 조사통계부
4. 노동안전보건부
5. 선전부
6. 문화·체육부
7. 대외협력부
8. 고용안정부
9. 정책기획부
10. 복지후생부
11. 법규부

제37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부: 조합원 가입, 조직규율 및 노동쟁의 발생 시 쟁의행위업무, 조합원의 합동단결을 위한 사항 및 각지회의 조직부, 쟁의부의 업무관장.
2. 교육부: 조합원의 노동교육과 기타 교육 및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정신도모와 명량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및 각지회의 교육부의 업무관장.
3. 조사통계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 및 통계사무를 담당하며 각지회의 조사통계부의 업무관장.
4. 노동안전보건부: 조합원의 재해에 대한 예방과 처리 및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각지회의 노동안전보건부의 업무관장.
5. 선전부: 조합의 대·내외 선전업무 및 각지회의 선전부의 업무관장.
6. 문화·체육부: 조합원의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단련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노동자의 놀이문화를 창조하며 각지회의 문화·체육부의 업무관장.
7. 대외협력부: 대내외 연대활동을 담당하며 각지회의 대외협력부의 업무관장.
8. 고용안정부: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고용보험해석 등을 연구하며 각지회의 고용안정부의 업무관장.
9. 정책기획부: 조합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대안제시 및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
10. 복지후생부: 조합원의 복지후생, 권익옹호를 담당하며, 각지회의 복지후생부 및 여성위원회의 업무관

장.

11. 법규부: 조합활동에 필요한 노동법규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각지회의 법규부의 업무관장.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8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을 갖는다.

제39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금속노조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2.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0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41조[쟁 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쟁의행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장 조합비와 회계

제43조[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부금, 기금 또는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44조[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약정통상임금 1%로 한다.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2%는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3. 지회 조합비는 지부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부 의무금, 금속노조 의무금, 인건비(전임자임금)를 제외한 지

회 운영자금으로 영달한다.

제4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6조[예산 미 성립시의 회계]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외에는 지불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제47조[결 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회계감사 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9조[예산목간전용] 예산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¼이상을 변경하거나, 과목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회계세칙,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세칙에 따른다.

제9장 지회

제51조[의결 및 집행사항] 지부는 지부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회를 통하여 관리한다.

1. 지회기관은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집행기관의 지시에 반하는 의결 또는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2. 지회는 제1항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 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지회의 임시관리] 지부장은 산하 지회 부실 운영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단) 특별조사반 편성 시 사고 지회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2. 전항에 의거 지회 내 수습곤란 또는 지부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판단되면 지 부장에게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한다.
3. 지회임원과 위원의 직무권한 정지를 명하고, 전항에 의거 위원을 파견, 지회일체의 업무를 총괄케 한다.
4. 전항의 지회 임원은 위원의 지시에 절대 응해야 한다.
5. 전 각 호의 조치를 취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3조[지회의 의무와 임무] 각 지회는 지부와 업무운영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행하고, 그 결과

를 분기별로 서면 보고한다.

1. 지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비와 특별부과금의 소정 기일 내 납부사항
3. 지회 내 운영, 행사, 활동, 조직변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지회의 권리]

1. 지회는 지부의 통계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회는 지부에 각종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지회의 운영]

1. 지회는 지부의 규칙을 준수한다.
2. 지회운영은 별도 규칙에 의한다.

제56조[조직단위] 지회는 지회소속 조합원으로 조직한다.

단, 장기 파견자에 대하여는 소속과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거리가 가까운 지회 조합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57조[청 산] 청산위원회는 조합비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10장 재정 및 기타

제58조[재 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 지부 특별부과금, 기부금, 기타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59조[징 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약, 규정,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징계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직위해제: 조합에서 직위를 해제한다.
4. 제명: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60조[공 고] 제58조에 의거 징계가 의결된 경우 징계결과를 다음날로부터 7일간 공고한다.

제6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적 용]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 지부규정, 제 규정, 지부 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만도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조합 규약 제2장 제14조 및 조합 쟁의기금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본 세칙을 이행한다.

제1조[신분보장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고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단) 지부장의 유고 시 지부규칙 제5장 제29조 1항 8호에 의거한다.
 - 1) 지부 운영위 : 2명
 - 2) 각 지회 집행위 : 1명
 - 3) 각 지회 대의원 : 1명,단, 신분보장심의위원 중 대의원은 각 지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심의대상자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분보장심의위원회를 15일 이내에 구성한다.
3. 신분보장 심의 대상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의장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성대상자 전원이 심의대상자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신분보장 심의절차]

1. 신분보장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로부터 사건배경설명을 들어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서면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다.
2. 신분보장 심의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결정권은 지부장에게 있다.
3.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수행하다가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4.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 이때 지부장은 5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단, 100만원 이하의 신분보장 재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된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5. 1조 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할 시 재심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한다.
6. 소액(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단, 재심 요청은 위4항과 관계없이 신분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1. 규약 제2장 제14조 및 조합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정 1항에 의거 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당한 자로서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자
2. 상급단체의 방침을 따르거나 사업장내 정당한 조합 활동 중 자본과정권의 탄압에 신 분상, 재산상 불이

익을 당한자로서 신분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자.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의해 지급대상자 결정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 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평균임금 의 700일 분을 일시불로 유족에게 지급 한다.
2. 해 고 :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 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속·수배 : 구속영장 발급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 비용일체를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단, 수배자는 조합의 관리 통제 하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구류·구금 :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일 할 지급한다.
5. 정 직 :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일할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6. 부 상
 - 1) 신체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해당기간 동안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준하여 지급하며, 개인 질병은 제외한다.
 - 2) 교통사고 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인 사고 시 법적비용을 지급하며 개인 합의금은 공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복용, 무보험,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7. 부상. 휴직 : 위 5항과 별도로 휴직 시는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거 휴직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손실차액만을 지급한다.

8. 구속 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사식 6만원, 간식 6만원, 잡비 3만원 등 월 1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9. 해고 및 정직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출근을 기피할 경우에는 미 출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 공제하며, 월 미출근 일수가 7일 초과하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10. 위 8항에 의거 조합에 출근하는 자는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다.

11. 법적투쟁 비용이라 함은 벌금, 공탁금,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말하며 변호사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단,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12. 위 각 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통상급 + 고정 잔업 40시간으로 규정 한다.

단,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13. 신분보장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이 이후, 퇴직금 정산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한다.

단, 지급 기준은 제4조 11항에 의거한다.

제5조[신분보장기금 적용] 조합, 지부 신분보장기금 지급대상자는 지부신분보장 지급운영세칙에 준하여 지급하고 조합신분보장 기금은 지부신분보장기금으로 환입한다.

제6조[신분보장기금 반환] 사망과 부상을 제외한 해고,정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신분보장기금을 지급 받은 자가 회사로부터 200%보상을 받은 경우 기 지급된 신분보장 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제29조) 신분보장기금 50%를 보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신분보장기금보다 적을 시 신분보장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거관리 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만도지부(이하‘조합’이라 칭함) 규칙 제6절 제2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 및 피선거권

제2조[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 규약에 의거 정권,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3조[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대의원선거 선거구]

1. 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 2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5조[선 출]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임원 (지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및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임원선출을 위한 구성을 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2. 지회 임원의 선출 :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 위원]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회 단위로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은 지부 및 지회의 임원과 각 부서부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임명 및 위촉]

1.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확정 공고
 - 나. 선거운동 관리
 - 다.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 라.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공고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산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예산집행 내역 및 기타 제반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고해야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9조[명부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공고 일로부터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 및 투표구 밖에서 장기출장(사내)을 하는 조합원으로써 자신의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세칙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관리세칙 제5장 제11조에 의거하여 선거 2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며,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 확인하여 시정한다.
2.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선거 절차

제11조[입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선거는 선거일 10일 이전, 지회장 선거는 선거일 7일 이전까지 별지 1, 2에 의거 공고한 후 그 공고된 내용이 5일간 게시되어야 한다.
2. 지회장 선거는 지부장 선거 후 입후보 등록을 한다.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등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12조[후보등록]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3)
 - 나. 이력서 1통
2.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으로 하며 지부와 지회는 별도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 단,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마감 시까지 보정 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인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의 추천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
5. 모든 투표에 1인 출마 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자는 재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13조[후보사퇴]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보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제14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마감 익일 10: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부서, 직위, 생년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제15조[참관인 등록 및 공고]

1. 각 후보는 선거전일 17: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당 2명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은 1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오전 09:00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 단,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 한 후 행한다.

제16조[투 표]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참관

인, 투개표 사무종사원은 별지 9의 표식을 착용한다.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별지 19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붓대통과 인주를 사용, 후보명단에 압인 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날인 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출장자 및 상주원, 파견근무자(국내외)에 한하며, 현장 투표와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개 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지부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18조[당선확정 및 공고]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자 순으로 1,2위를 선정, 결선투표에 붙여 결정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득표자를 선정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관련사항은 선거관리 운영세칙 12조 5항에 따른다. 단, 동수 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2인 일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득표자 1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동수 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2007년 01월22일 4기 2년차 정대 신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1)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2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고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 한다.(별지12)

제19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의 반 이상이 기표란 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20조[이의신청]

1. 당선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선포 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무효 시는 앞의 공고에 재투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단) 재투표는 앞의 공고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장 기타임원 선출

제21조[기타 임원선출 방법]

1. 기타 임원이라 함은 감사위원을 말한다.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사항)
2. 기타 임원 선출은 공고 후 지부장이 추천하여 정기(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2항의 방법으로 심의에서 부결된 자를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직책으로 재 추천할 수 없다.
4. 지회의 기타임원은 지회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선출시 전항의 적용을 받는다.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사항)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선거인(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소개, 정책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선거기간의 모든 선거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
2. 홍보물의 발행횟수는 1일 1회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사진 및 약력 그리고 후보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최소한 7일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4. 선거운동은 본 규정 제2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제한하지 않는다.
5.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24:00로 한다.
6. 통일된 복장(어깨띠, 조끼, 티, 머리띠, 패찰)은 등록된 입후보자에 한한다.

제23조[선거유세]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유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2. 후보자의 선거유세는 합동으로 지회를 순회하며 연설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 연설은 지지연설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 야간근무자는 각 지회실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부정선거운동 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후보에게 통보하고, 3일간 공고하며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모략, 비방 등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선거공고문 또는 시설물 투표함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장 부 칙

제25조[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규칙, 총회(대의원대회)결의,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회계 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규약 제 77조, 지부회계세칙에 의거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본]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결 제]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부장(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단, 반드시 항목대장에 기장하고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제8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말일 내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9조[예산편성]

1. 지부장(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예산 편성토록 한다.

제10조[수입의 수납] 지부장(지회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2/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승인] 지부장(지회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 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지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대의원대회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제16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회계원 임명] 예산 집행자는 지부규칙에 의거 임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19조[회계원 책임]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20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지부장(지회장) 또는 규칙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2. 일상 업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합은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지 출

제22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증빙]

1. 전 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정액 직무판공비, 기밀비, 경조비, 교통비, 기타)

제5장 출장 및 여비

제24조[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지부간부 및 조합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및 당일출장 - 실비지급
2. 국내출장
 - 가.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 차마비 등 실비
 - 나. 숙박비 - 여관, 호텔비, 실비
 - 다. 식 비 - 음식비, 통상식비
 - 라. 활동비 - 출장지 시내교통비 및 기타 잡비
3. 시내출장 및 당일출장은 시내출장부를 비치하고 결재를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4. 국내출장은 출장 명령부에 의거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여비지급 규칙에 의한다.
6. 출장여비는 여비지출 결의서에 의거 지급하며 계산불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장 완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5조[장부의 비치] 지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 원장
2. 항목대장
3. 현금출납부
4. 기타보조

제26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

제27조[감사의 의무] 감사위원은 조합규약 제36조, 37조 및 지부회계규정, 지부운영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집행한다.

제30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정을 요하는 사항

제31조[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세칙 제1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및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별도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 - 이하 같음)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준한다.

제35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장여비지급 운영 세칙

제1장 출 장

제1조 지부, 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2조 지부,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출장자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2장 여 비

제5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여, 숙박료는 숙박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국내출장여비 지급규정 의하여 교통비 실비와 활동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제9조 차마비는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육로구간에 한하여 그 실비를 지불한다.

제10조 출장기간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출장할 경우 그 액이 전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 보조금과 잡비는 이에 관계없이 별도 지불한다.

제12조 당일 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는 국내출장여비지급 운영세칙에 의거 지급한다.

제13조 국외에 출장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활동비, 보조금, 숙박료, 잡비
2. 교통비(항공비, 철도비, 선박비)의 실비
3. 잡비(예방주사비, 여권교부 수수료, 탑승 수수료, 외환교환 수수료, 사진 촬영비, 부속 서류교부 수수료)의 실비.

단, 잡비가 보조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급으로 대신한다.

국내출장여비 지급 세칙

1. 차 마 비 : 실비
2. 숙 박 비 : 2인 1실 기준 60,000원
3. 식 비 : 1식 11,000원
4. 활 동 비 : 일비: 10,000원

대내경조금 지급 세칙

애경사시에는 조합의 지급세칙에 의거한다. (증빙서류 첨부)

1. 본 인 결 혼 ----- 5만원
2. 부모상(배우자포함) ----- 5만원
3. 부모회갑(배우자포함) ----- 5만원
4. 부모칠순(배우자포함) ----- 5만원
5. 자 녀 상 ----- 5만원
6. 자 녀 결 혼 ----- 5만원
7. 부모상(배우자포함) -----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8. 본인 상 및 배우자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조합원 1인당 15,000원씩 일괄공제 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 후 12개월 이내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판단 받은 경우 대내경조금 지급 세칙 8항을 적용한다.

1987년 08월 09일 제정
1987년 10월 19일 개정
1988년 08월 13일 개정
1989년 09월 23일 개정
1990년 09월 26일 개정
1991년 08월 30일 개정
1992년 08월 29일 개정
1993년 08월 31일 개정
1994년 12월 01일 개정
1995년 09월 19일 개정
1996년 03월 22일 개정
1996년 05월 30일 개정
1996년 09월 20일 개정
1997년 09월 10일 개정
1998년 03월 23일 개정
1998년 12월 15일 개정
1999년 04월 21일 개정
1999년 11월 03일 개정
2000년 11월 08일 개정
2000년 12월 19일 개정
2001년 04월 27일 개정
2001년 05월 31일 개정

2001년 11월 29일 개정
2002년 11월 25일 개정
2003년 11월 20일 개정
2004년 11월 19일 개정
2005년 11월 24일 개정
2007년 01월 22일 개정
2007년 12월 07일 개정
2010년 03월 19일 개정
2010년 09월 15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26년 02월 06일 개정
2026년 07월 01일 개정